

협회, EPS 수산물 양식용 부자 자발적 협약 수행

지난 6월 30일 당 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스티로폼 수산물 양식용 부자에 대한 재활용 자발적 협약 단체로 지정되었다. 협약 수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1 협약의 도입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27일 그간 폐기물 부담금 품목으로 지정되어 부담금을 납부하면 스티로폼 수산물 양식용 부자에 대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목표 재활용율에 맞춰 업계가 자발적으로 회수·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도록 하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자세한 내용 환경사랑 2007년 여름호 참조)

2 협약 이행 계획

- 환경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단체로 지정(2008. 6. 30)
- 자발적 협약 참가업체: 스티로폼 수산물 양식용 부자 생산업체 8개소
- 2008년도 재활용 의무율: 20.2%, (예상 재활용 총량 229,674kg주정)
- 재활용사업자 현황: 연안지역 지자체 19개소(현 가입 10개소) 및 민간 재활용 사업자
- 재활용 목표 미이행 부과금: 미이행량×기준비용 645원/kg×1.3

3 자발적 협약 이행 대상업체의 협회 가입 안내

[제출자료]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획약서(별지 제3호서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협조사항]

- 매분기초에 귀사가 판매한 양식용 EPS 부자의 출고량 제출(별첨:별지 제4호서식,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제조·수입관리대장)

[폐기물 부담금 품목의 재활용 분담금]

- 분담금 = 년간 출고량 × 재활용 의무율 × 분담금 기준액
- 가입 첫해 년도의 분담금 기준액은 일반분담금+기본분담금이며 기존 EPR 가입업체는 기본분담금 면제, 그 다음해부터는 일반분담금만 납부.
- 매분기마다 전분기 출고 실적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당 해 년도 총 출고 실적이 확정되는 익년 3월에 분담금을 정산합니다.

구분	일반분담금	기본분담금	비교
EPS 양식용 부자	95원/kg	9.5원/kg	

[재활용 의무율(매년 환경부와 협의후 결정)] • 2008년: 20.2%

[당 협회의 대행업무]

- 귀사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이행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보고
- 재활용 실적 확보

[참여약정의 해지]

- 당 협회가 청구한 분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거나 출고실적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1회 독촉후 가입 취소



4 지자체 및 재활용사업자의 협회 가입 안내

[협회 가입 서류]

- 지자체: 플라스틱 폐기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확인서(별지 제 3호서식), 지정승락서(당 협회 양식)
- 재활용사업자: 플라스틱 폐기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확인서(별지 제 3호서식), 재활용사업자지정신청서(당 협회 양식)

[재활용 실적 제출 자료: 년 4회(매분기) 제출]

- EPS 양식용 폐부자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재활용기준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한 실적(판매한 계량증명서, 계근표, 세금계산서 등)
-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재활용 실적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년 4회(매분기)]

- 지원금 지급 단가: 40원/kg

[실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매 분기 초]

[협조 요청 사항]

-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유관단체에서 재활용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자료 확인 요청시 협조 요망

※재활용 실적 제출시 실적 제출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실적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